연 수 규 정

제 정 : 1992. 9. 5
1차개정 : 1994.10.19
2차개정 : 1997. 5.30
3차개정 : 1999. 1.30
4차개정 : 2002. 5.10
5차개정 : 2006. 6. 8
6차개정 : 2007. 4.27
7차개정 : 2007.12.20
8차개정 : 2009. 6.12
9차개정 : 2012. 3. 9
10차개정 : 2017. 6. 7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분) 연수는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로 구분한다.

제 3 조(연수계획의 수립) ①연수담당부서장은 매년 초 사업계획 보고시 당해 연도의 연수목표, 주요 연수과정 및 선발계획 등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수담당부서장은 제1항과 관련한 세부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연수담당부서장은 연수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각 부서장(지사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연수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연간연수계획에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연수계획의 변경) 제3조에 의하여 확정된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연수후보자 및 연수대상자의 선정) ①연수담당부서장은 제3조의 연수계획에 따라 연수후보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연수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연수대상자는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연수대상자 선정권자(이하 "선정권

자"라 한다)가 제1항의 연수후보자중에서 정한다.

제 6 조(연수 참가 의무) ①연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수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동 연수에 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연수후보자 추천을 의뢰받거나 소속직원이 연수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경우 해당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자기계발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야한다.

제 2 장 국내연수

제 7 조(구분) ①국내연수는 사내연수와 사외연수로 구분하고, 사내연수는 업무연수, 외국어연수 및 기타 사내연수로 구분한다.

②업무연수는 연수담당부서 업무연수, 소관부서 업무연수 및 부서자체 업무연수로 구분한다.

제 8 조(연수담당부서 업무연수) 연수담당부서장은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의 습득을 위하여 직급별, 직능별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연수담당부서 업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9 조(소관부서 업무연수) ①각 부서장은 소관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담당부서장의 사전합의를 받아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소관부서 업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수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에게 소관부서 업무연수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연수를 실시한 후 해당 부서장은 그 결과를 연수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부서자체 업무연수) ①각 부서장은 부서자체의 세부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각 부서장은 부서자체 업무연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담당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1 조(외국어연수 및 고시) 연수담당부서장은 직원의 외국어 활용능력배양을 위하여 외국어연수 및 외국어고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2 조(기타 사내연수) ①연수담당부서장은 직원의 사무기능향상, 정서함양 및 자기계발등을 위하여 전산연수, 교양강좌, 국내산업시찰 등 기타 사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수담당부서장은 직원의 사무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내 사무기능경진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연수담당부서장은 외부인사에 대한 수탁연수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동 연수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④연수담당부서장은 국외근무직원으로 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임 전에 현지 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의한 수탁연수의 경우, 수탁연수자에 대하여 계약직원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수담당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사외연수) 연수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 학술연수
   국내 대학 및 대학원 등에서 학술연구과정을 이수하는 연수
2. 업무연수
   사외 전문교육기관에서 업무관련분야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연수
3. 외국어연수
   외국어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사외 외국어교육전문기관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연수
4. 관리능력개발연수
   관리능력개발 또는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대학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5. 기타사외연수
   기타 사외기관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연수

제 13 조의 2(소관업무 사외연수)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연수를 연수담당부서장의 사전합의를 받아 사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의 3(연수비) ①연수자에 대하여 등록금, 참가비, 교재대 등 연수에 따르는 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근무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연수 파견되거나 또는 국내연수 기간 중 해당 연수과정에서 국내 원거리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국내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원거리 연수처로 3개월 이상 연수 파견된 직원(공모를 통한 선발 직원은 제외)에 대하여는 「복지규정 시행요강」 제4조에 따른 교통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국내연수 기간 중 해당 연수과정에서 국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제18조 제1항의 연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국외연수

제 14 조(구분) 국외연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술연수
   가. 일반학술연수
      외국의 대학원 등에서 학술연구과정을 이수하는 연수로서 제18조 제1항의 연수비를 지급하는 연수
   나. 자비학술연수
      외국의 대학원등에서 학술연구과정을 이수하는 연수로서 제18조 제1항의 연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연수
2. 업무연수
   외국의 수출보험기관, 금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업무관련분야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연수
3. 외국어연수
   외국어 활용능력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외국어교육전문기관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연수
4. 관리능력개발연수
   관리능력개발 또는 국제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연수
5. 근무연수
   국외사무소 또는 수출보험 유관기관에 근무하면서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연수
6. 기타국외연수
   시찰 또는 견학 등을 위한 연수

제 15 조(연수기간 및 연수파견기간) ①국외연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연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업무연수, 외국어연수, 관리능력개발연수 및 근무연수 : 1년 이내
2. 학술연수: 2년 이내. 다만, 파견과정의 이수기간이 학제상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기타국외연수 : 3월 이내

②연수파견기간은 당해 연수기간에 다음 각호의 준비기간(여행소요일수 포함)을 더하여 정한다.

1. 학술연수 및 연수파견기간이 6월 이상인 외국어연수, 업무연수 및 관리능력개발연수 : 연수기간 전후 총 30일 이내
2. 제1호 이외의 국외연수 : 연수기간 전후 총10일 이내

3. 근무연수 : 인사관리규정시행요강에서 정한 부착임기일 준용

제 16 조(자격기준) 국외연수를 받을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국외연수대상 인원수는 제3조의 연간 연수계획에 따른다. 다만, 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보자 추천일 현재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다만,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연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학술연수 및 관리능력개발연수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4년 이상인 자
2. 연수과제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갖춘 자
3. 연수에 사용되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
4. 근무성적이 좋은 자
5. 기타 연수실시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제 17 조(삭 제)

제 18 조(연수비) ①국외연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한 연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 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요령에서 정하는 체재비
2. 「여비규정」에서 정한 교통비 및 부대비
3. 연수에 필요한 등록금 및 참가비
4. 연수파견기간이 3월 이상인 직원에 대한 현지 의료보험료
5.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근무연수자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물가 등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연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수규정」 및 「복지규정」에 따라 국외근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연수비는 공사의 사정 또는 연수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원화로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의2(연수비의 차감지급)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연수비를 차감 지급할 수 있다.

1. 정부의 외화사용에 관한 특별허가나 제한이 있는 경우
2. 연수자가 연수실시기관으로부터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비의 일부를 지원받거나 공사가 연수실시기관에 해당 연수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3. 기타 연수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8 조의3(국외근무자의 외국어 연수) 국외근무자는 임지국내의 외국어 교육전문기관에서 외국어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제 19 조(삭 제)

제 4 장 연수자의 의무

제 20 조(삭 제)

제 21 조(삭 제)

제 22 조(일반적 의무) ①연수자는 해당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위하여 연구·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외 또는 국외연수자는 연수파견기간 중 공사 및 국가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외연수자는 연수파견기간이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④(삭 제)

제 22 조의2(연수이수상황 등의 보고) ①사외 또는 국외연수자는 연수파견기간 중 발생한 연수와 관련된 중요 변동사항을 연수담당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수기간이 6월 이상인 국외연수자는 연수기간 중 6월마다 연수계획 및 연수이수상황을 연수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내 및 국외학술연수자는 매학기 학업성적표를 연수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의3(연수결과등의 보고) ①사외연수자는 연수종료 후 지체 없이 연수담당부서장에게 연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실시기관으로부터 연수결과를 통보받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연수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내 및 국외학술연수자는 종료 후 학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취득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취득조건의 학술연수자로서 연수종료시까지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수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비로 학위를 취득하여 학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외연수자는 귀국 후 1월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수종료 후 해당 연수처로부터 학위증이나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
2. 기타 국외연수를 받은 자로서 연수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3. 기타 연수담당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 22 조의4(서약서 등의 제출) 사외 및 국외연수자는 연수파견 전에 연수과정의 성실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복무의무) ①국내학술연수를 받은 직원은 연수종료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1. 근무를 병행하지 않는 경우 : 연수기간의 2배
2. 근무를 병행하는 경우 : 연수기간의 1/2

②국외학술연수를 받은 직원은 연수종료 후 그 연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③복무의무대상연수를 2회 이상 받은 직원에 대한 제2항에 정한 복무의무기간은 마지막으로 받은 연수의 연수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받은 연수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미 발생한 복무의무기간이 최종연수의 연수기간을 기준으로 한 복무의무기간보다 장기일 때에는 이미 발생한 복무의무기간에 따른다.

④복무의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만으로 산정하며, 복무의무기간중의 복무의무대상연수는 이를 복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관리규정상의 휴가기간(인병휴가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은 경우만을 포함한다) 및 사장이 특별히 인정한 파견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연수관리

제 23 조의2(연수중지) 연수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선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연수자에게 연수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질병, 사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연수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연수에 태만하거나 연수기간 중 이 규정에서 정한 연수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24 조(연수비의 변상) ①사외 또는 국외연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연수비 범위 내에서 이를 변상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연수담당부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수기간 종료 이전에 연수를 임의로 중단한 자
2. 제23조의 2 제2호의 사유로 연수중지명령을 받은 자
3. 해당연수과정을 출석미달, 성적불량 등의 사유로 미이수한 자

②제23조에 정한 복무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연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연수비를 복무의무기간에 대한 남아있는 복무의무기간의 비율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담당부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 24 조의2(연수평가) 연수담당부서장은 연수효과의 측정과 연수업무의 개선 등을 위하여 연수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5 조(강사위촉) ①연수담당부서장은 직원연수를 위하여 직원 또는 국내외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된 강사에게는 강사료 및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6 조(연수교재) ①연수담당부서장은 직원연수에 필요한 각종 연수교재를 자체 제작 또는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연수담당부서장은 사내외 적임자를 연수교재집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및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전달교육) 연수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연수이수자에 대하여 전달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 6 장 연수이수제

제 28 조(연수성적관리 방법) ①연수성적관리는 필수과정, 선택과정 및 외국어고시로 구성되는 연수이수제에 의한다.

②외국어고시의 경우에는 **종합평정 시행요강에 따른 평정자 및 평정대상자 확정기준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의 성적 중 각 어종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 29 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규정시행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2. 7.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의 연수규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이수증인 연수는 이 규정에 따른 연수로 본다.

부 칙(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규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중인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199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별표」의 국외연수 체재비 지급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중인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 5.10.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별표」의 국외연수 체재비 지급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5)

이 규정은 2006년 6월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규정 제23조는 시행일 이후 연수가 종료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9)

이 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이 규정은 2017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